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 
동의안

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# 심 사 보 고 서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623 |
|----------|-----|

2021. 1. 28.(목)  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1년 1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월 22일

-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용호 보건정책과장)

가. 제안사유

-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「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10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‘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’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며,

-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험과 전문성이 확보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: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
- 시설위치: 수탁기관 내
- 위탁기간: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간
- 위탁방법: 공개모집
- 사업비: 2021년도 330,000천원
  - ※ 매년 국고보조금 확정내역에 따라 사업비 편성(변동 가능)
- 수탁기관: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\*

\*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

1.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
2. 「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
3. 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
4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
5.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
6. 「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
7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
8.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
9.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
10.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
11. 「암관리법」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
12.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
### ○ 위탁주요사무

-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
-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
- 의료인력 DB구축을 통한 의료취약지 인력 지원
-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종사자 교육·훈련
- 공공보건의료 자원, 실적 통계관리 및 모니터링
- 공공의료기관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
-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지원
-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사업 발굴
- 충청도민 교육 프로그램, 연구조사 등을 통한 도민 참여 기반 구축
-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3. 검토보고 요지 (김주희 수석전문위원)

### 가. 법적근거

- 본 동의안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「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10조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사항이며,
- 동 시설의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는 적절함.

### 나. 종합 검토의견

-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술적 지원 및 의료 자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

- ‘의료’ 라는 특수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, 민간의 축적된 전문지식이나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므로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 제10조에 근거하여 전문의료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.
- 전문의료기관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, 도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가 기대됨.
- 다만, 민간위탁기관이 지자체의 업무 지원은 물론 공공의료의 싱크탱크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위탁기관 선정 시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,
- 민간위탁 기간(3년)이 정해진 탓에 우수인력 채용이나 업무의 연속성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, 수탁자 선정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,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.

## □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

제22조(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·운영) ① 시·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,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□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(공공단체의 범위)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 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.

1.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
2. 「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
3. 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
4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
5.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
6. 「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
7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
8.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
9.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
10.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
11. 「암관리법」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
12.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
## □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

**제2조(설치)**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위한 정책적·기술적 지원 및 의료 자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**제10조(위탁운영)** 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## 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**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**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5. 그밖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

**제4조의2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**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

## 참고 2

## 타 시·도 지원단 설치 및 운영현황

### < 타 시·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현황 >

【설치 12】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, 경기, 강원, 전남, 경남, 제주

【예정 2】 '21년도 충북, 경북

(2020.12월 현재)

| 구분     | 서울<br>(재단)   | 부산      | 대구                 | 인천           | 광주                 | 대전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설치일    | '12. 7.      | '15.12. | '20. 7.<br>(20.신규) | '13. 8.      | '20. 5.<br>(20.신규) | '20. 5.<br>(20.신규) |
| 위탁기관   | 서울공공보<br>건재단 | 부산의료원   | 경북대학교병원            | 인천광역시<br>의료원 | 전남대학교병원            | 충남대학교병원            |
| '20.예산 | 39억          | 11.5억   | 3억                 | 6억           | 3억                 | 3.8억               |
| 인력     | 28명          | 13명     | 6명                 | 9명           | 5명                 | 6명                 |

| 구분     | 울산                 | 경기      | 강원      | 전남      | 경남      | 제주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설치일    | '20.10.<br>(20.신규) | '17. 3. | '19. 5. | '19.10. | '19. 6. | '17. 4. |
| 위탁기관   | 울산대학교병원            | 분당서울대병원 | 강원대학교병원 | 직영      | 경상대학교병원 | 제주대학교병원 |
| '20.예산 | 1.5억               | 12.7억   | 6억      | 4.8억    | 10억     | 5억      |
| 인력     | 5명                 | 11명     | 6명      | 5명      | 8명      | 6명      |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

#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623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21년 1월 11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「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10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'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' 설치·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.
-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험과 전문성이 확보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: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
- 시설위치 : 수탁기관 내
- 위탁기간 :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간
- 수탁기관 :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 
※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
- 사업비 : '21년도 330,000천원(국비 150,000천원, 도비 180,000천원)  
※ 매년, 국고보조금 확정내역에 따라 사업비 편성(변동가능)

○ 위탁 주요사무 (조례에 근거한 주요업무)

-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
-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
- 의료인력 DB구축을 통한 의료취약지 인력 지원
-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종사자 교육·훈련
- 공공보건의료 자원, 실적 통계관리 및 모니터링
- 공공의료기관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
-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지원
-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사업 발굴
- 충청도민 교육 프로그램, 연구조사 등을 통한 도민 참여 기반 구축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타 시도 지원단 설치·운영현황

**< 타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현황 >**

【설치 12】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, 경기, 강원, 전남, 경남, 제주

【예정 2】 '21년도 충북, 경북

('20.12월 현재)

| 구분     | 서울<br>(재단)   | 부산         | 대구                  | 인천             | 광주                  | 대전                  | 울산                  | 경기           | 강원           | 전남      | 경남           | 제주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설치일    | '12. 7.      | '15.12.    | '20. 7.<br>(*20.신규) | '13. 8.        | '20. 5.<br>(*20.신규) | '20. 5.<br>(*20.신규) | '20.10.<br>(*20.신규) | '17. 3.      | '19. 5.      | '19.10. | '19. 6.      | '17. 4.      |
| 위탁기관   | 서울공공<br>보건재단 | 부 산<br>의료원 | 경북대학교<br>병 원        | 인천광역시<br>의 료 원 | 전남대학교<br>병 원        | 충남대학교<br>병 원        | 울산대학교<br>병 원        | 분당서울대<br>병 원 | 강원대학교<br>병 원 | 직 영     | 경상대학교<br>병 원 | 제주대학교<br>병 원 |
| '20.예산 | 39억          | 11.5억      | 3억                  | 6억             | 3억                  | 3.8억                | 1.5억                | 12.7억        | 6억           | 4.8억    | 10억          | 5억           |
| 인 력    | 28명          | 13명        | 6명                  | 9명             | 5명                  | 6명                  | 5명                  | 11명          | 6명           | 5명      | 8명           | 6명           |

#### 나. 관계 법령 : 별첨

-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(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·운영)
-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 (공공단체의 범위)
- 「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10조 (위탁운영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 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2 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

함께하는 **도민**  
일등경제 **충북**

-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-  
**운영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**



충청북도  
보건정책과

# -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-

## 운영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

‘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’ 신규설치(‘21.상반기)에 따라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

※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의2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/ 2020.12.18.신설

### I 관련규정

-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2조(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·운영)
- 「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(위탁운영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2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/ '20.12.18.신설

### II 민간위탁 대상 사무현황

- 위탁사무 :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
- 위탁기관 :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
- 시설위치 : 수탁기관 내
- 위탁금액 : '21년도 330백만원(국비 150백만원<sup>45%</sup>, 도비 180백만원<sup>55%</sup>)  
※ 매년, 국고보조금 확정내역에 따라 사업비 편성(변동 가능)
- 위탁기간 : 3년간\* \* 협약서, 위탁기간 명시('21.4.1. ~ '24.3.31.예정)  
※ 근거 :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제4항
- 운영인력 : 6명(단장1, 책임연구원 2, 연구원 2, 행정요원 1)
- 위탁 주요사무

▶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주요사무

**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요업무**

1.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
2.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
3. 의료인력 DB구축을 통한 의료취약지 인력 지원
4.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종사자 교육·훈련
5. 공공보건의료 자원 및 실적 통계관리 및 모니터링
6. 공공의료기관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
7.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지원
8.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사업 발굴
9. 충청북도민 교육 프로그램, 연구조사 등을 통한 도민 참여 기반 구축
10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**

| 검 토 항 목             | 검 토 의 견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|
|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및 「시·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지원사업 안내」 지침(보건복지부)에 근거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무로,</li> <li>○ 최적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사료됨</li> <li>※ 지원단 운영중인 12개 시·도중 11개소 위탁운영중이며, 직영인 1개소도 위탁 검토중</li> </ul> |    |
|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필수의료의 지역격차 해소 및 전 도민 의료서비스 보장 등 공공의료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공공성 확보</li> <li>○ 서비스 공급체계 또한, 전문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공공의료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공급의 안정성 보장</li> <li>※ 직영일 경우, 잦은 인사이동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</li> </ul>       |    |
| ③ 경제적 효율성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공보건의료의 정책역량 강화는 물론, 신속·정확한 업무수행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</li> </ul>  |    |

| 검 토 항 목                | 검 토 의 견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기존에 구축된 인력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 효과   |    |
|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| ○ 공공의료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, 인력, 네트워크 등 활용을 통해 공공의료보건의료사업의 효율성 및 질적 서비스 향상 도모   |    |
|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         | ○ 매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목표 대비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측정이 용이하며,<br>○ 관련 자료는 통계자료 등으로 활용, 사업개선과 발전 도모   |    |
|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       | ○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·감독 권한이 있으며, 위·수탁 체결을 통해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<br>※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근거, 지휘·감독 및 업무 처리가 위법·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취소·정지 조치 가능<br>○ e-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) 활용, 보조금 관리 |    |
|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    | ○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2항에 근거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<br>○ 위탁 가능한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3개소로, 도민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적정 공급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|    |

#### IV 검토결과 ➡ **적정**

-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및 「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사무로,
-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임.
- 해당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, 행정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증대

❖ 공공적 성격이 명확하고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는 바,  
해당사무는 ‘민간위탁’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

## V 향후계획

- '21. 1.       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제출·심의
- '21. 2. ~    수탁기관 공개모집
- '21. 2.~3. 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, 협약체결
- '21. 4.~5.   사업계획서·운영규정 제출·승인, 국고보조금 교부(보건복지부)
- '21. 6. ~   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



함께하는 **로민**  
일등경제 **충부**

-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-  
**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**



보건복지국  
보건정책과

# -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-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

‘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’ 신규설치(‘21.상반기)에 따라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

※ 「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정 (2020. 9. 29.)

## I 관련규정

-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2조(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·운영)
- 「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(위탁운영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## II 위탁개요

- 위탁사무 :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
- 위탁기관 :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
- 시설위치 : 수탁기관 내
- 사업비 : '21년도 330백만원(국비 150백만원<sup>45%</sup>, 도비 180백만원<sup>55%</sup>)  
※ 매년, 국고보조금 확정내역에 따라 사업비 편성(변동 가능)
- 위탁기간 : 3년간\* \* 협약서, 위탁기간 명시('21.4.1. ~ '24.3.31.예정)  
※ 근거 :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제4항
- 운영인력 : 6명(단장1, 책임연구원 2, 연구원 2, 행정요원 1)
- 위탁 주요사무

▶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주요사무

**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요업무**

1.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
2.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
3. 의료인력 DB구축을 통한 의료취약지 인력 지원
4.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종사자 교육·훈련
5. 공공보건의료 자원 및 실적 통계관리 및 모니터링
6. 공공의료기관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
7.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지원
8.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사업 발굴
9. 충청북도민 교육 프로그램, 연구조사 등을 통한 도민 참여 기반 구축
10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Ⅲ 추진체계 및 절차**

|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
| ① 추진계획        | • 추진계획 수립   | '20. 12월    |
| ② 의회동의        | • 민간위탁 의회동의 ('21. 1월 회기)  | '21. 1월     |
| ③ 위탁공모        | • 수탁기관 선정<br>- 방법 : 공개모집<br>- 자격 :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 | '21. 2월     |
| ④ 심사·선정       | •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·개최<br>- 구성 : 6~9명 정도<br>- 심사 : 기관역량 및 전문성, 사업계획 등<br>- 결정 : 최저·최고 제외, 고득점자 선정 | '21. 2 ~ 3월 |
| ⑤ 협약체결        | • 협약체결 및 공증   | '21. 3월     |
| ⑥ 사업계획서 제출·승인 | •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제출·승인(보건복지부)<br>• 국고보조금 신청·교부  | '21. 4 ~ 5월 |
| ⑦ 사무개시        | • 위·수탁 사무개시   | '20. 6월     |

## IV 세부 추진계획

### ① 도의회 동의

- 근거 :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 제1항

#### ❖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1항

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**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** (이하 '의회'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## ② 위탁 공고

- 공고방법 : 충청북도 홈페이지 공고
- 응모자격 : 충청북도 소재 공공보건의료기관\*
  - \*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

국립대학병원, 국립대학치과병원, 국립중앙의료원, 국민건강보험공단, 대한적십자사, 한국원자력의학원, 근로복지공단, 서울대학교병원, 서울대학교치과병원, **지방의료원**, 국립암센터,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
### ③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

- 개최시기 : 공개모집 신청접수 후
- 운영기간 : 수탁기관 선정 후 자동 해촉

####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

1. 근거 :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 및 제7조
2. 구성 : 위원 6~9명 이내 (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)
  - ※ (당연직 3) 기획관리실장(위원장), 행정국장, 보건복지국장
3. 의결방법 :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
- 선정방법 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·결정
  - 기관역량 및 전문성 평가 : 사업수행능력, 지원단 운영계획
  - 공공보건의료사업계획 평가 : 조사·연구, 실적통계·모니터링 등 수탁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

- 종합평가 : 공공의료 인프라 연계와 조정 등 정책적 지원능력
- ※ 최고·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,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 선정

#### ④ 협약체결 및 공증

- 체결시기 : 수탁기관 선정 후('21. 3. 예정)
- 내 용 :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
- ※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(협약체결)

### V 향후계획

- '21. 1.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제출·심의
- '21. 2. ~ 수탁기관 공개모집
- '21. 2~3.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, 협약체결
- '21. 4~5. 사업계획서·운영규정 제출·승인, 국고보조금 교부(보건복지부)
- '21. 6. ~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

**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**

제22조(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·운영) ① 시·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,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**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**

제2조(공공단체의 범위)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 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.

1.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
2. 「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
3. 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
4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
5.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
6. 「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
7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
8.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
9.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
10.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
11. 「암관리법」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
12.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
## 「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**제2조(설치)**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·기술적 지원 및 의료 자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**제10조(위탁운영)** 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##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

**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**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5. 그밖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

**제4조의2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**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

## 붙임2 2021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소요예산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금 액                | 산 출 내 역   |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총 계 | 330,000            | ◦ (9개월분) 소요예산 기준 산출   |   |
| 인건비 | 164,700<br>(49.9%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단장(겸직) : 월 1,000천원 × 9월 × 1명</li> <li>◦ 팀장(책임연구원) : 월 4,800천원 × 9월 × 2명</li> <li>◦ 주임연구원 : 월 3,300천원 × 9월 × 1명</li> <li>◦ 일반연구원 : 월 2,400천원 × 9월 × 1명</li> <li>◦ 행정요원 : 월 2,000천원 × 9월 × 1명</li> </ul> | <p>9,000</p> <p>86,400</p> <p>29,700</p> <p>21,600</p> <p>18,000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비 | 115,000<br>(34.9%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정책연구사업비</li> <li>◦ 통계구축사업비</li> <li>◦ 통합 교육체계·환자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</li> <li>◦ 공공보건의료 교육사업</li> <li>◦ 자문수당, 회의비, 여비</li> <li>◦ 행사비(출범식 및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 등)</li> <li>◦ 홍보비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30,000</p> <p>15,000</p> <p>20,000</p> <p>10,000</p> <p>10,000</p> <p>20,000</p> <p>10,000</p> |
| 운영비 | 50,300<br>(15.2%)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무실 조성(설립 첫회)</li> <li>- 사무기기 등 물품 구입</li> <li>◦ 업무추진비</li> <li>◦ 일반수용비</li> </ul>   | <p>30,000</p> <p>10,000</p> <p>10,300</p>   |

\* 단장(전문의취득후 10년경과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 경력 5년 이상인자, 또는 부교수 이상), 책임연구원(관련분야 전문의 또는 박사급 이상), 주임연구원(석사급 이상), 일반연구원·행정(학사급 이상)